

Eurostars3 온라인 사업설명회

2022. 07. 25.

Contents



01 | 사업 개요

02 | 유로스타3

03 | 접수 전 주의사항

04 |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

05 | K-TAG 사전컨설팅

06 | Q&A



01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국내 산. 학. 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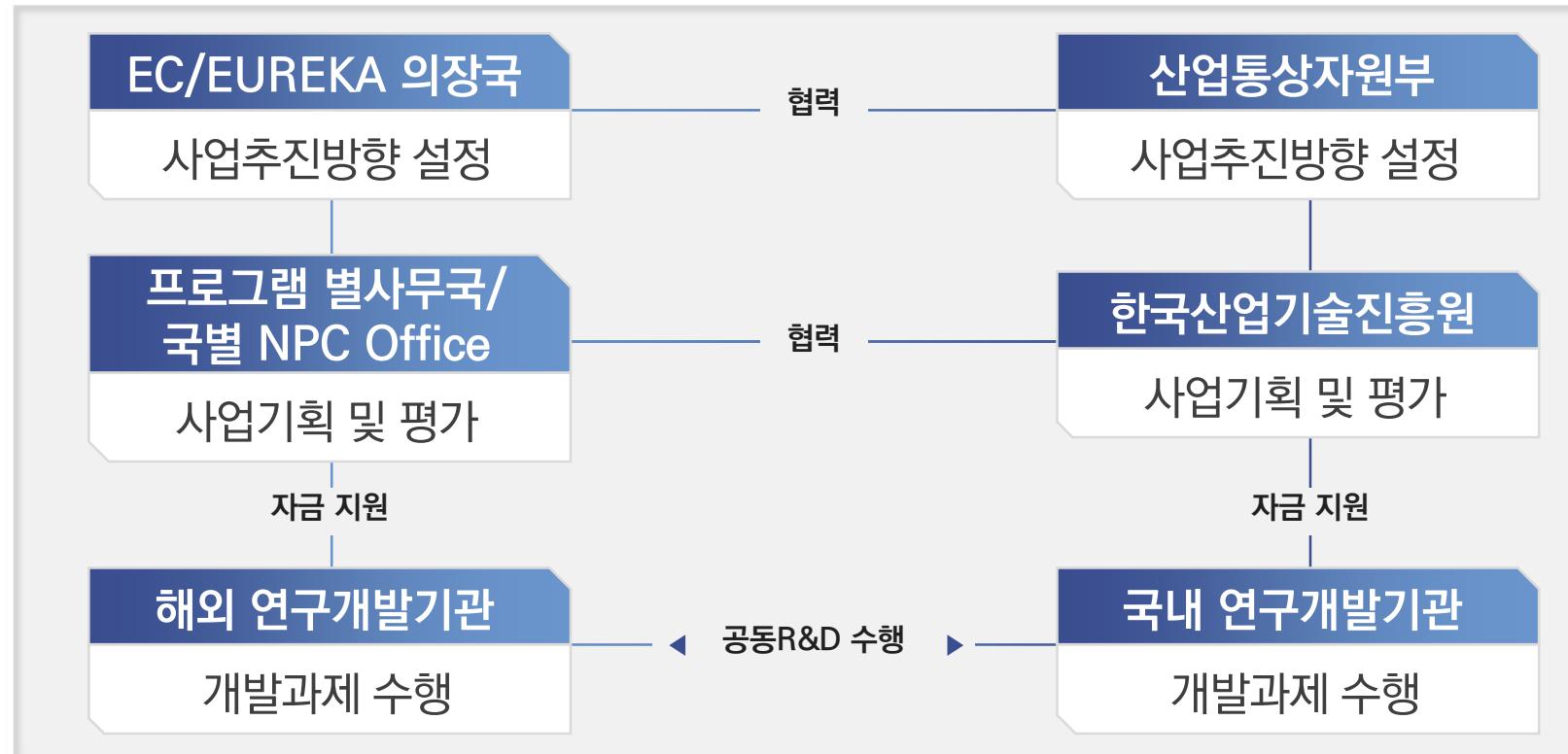
- **(양자 공동펀딩 R&D)**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인도, 중국, 체코, 캐나다, 프랑스
- **(다자 공동펀딩 R&D)** 유럽R&D플랫폼(유레카, 유로스타3, H2020)에 가입된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다자 공동펀딩 R&D의 유럽R&D 플랫폼별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유레카(EUREKA)		유로스타3 (EUROSTARS3)	HORIZON 2020 (H2020)
	네트워크 (Network Project)	클러스터 (CLUSTER)		
사업운영기관	유레카 사무국	클러스터 사무국	유로스타 사무국	EU 집행위
특징	시장지향형 산업기술개발	분야별 대규모 연구혁신 컨소시엄	중소기업 전용	EU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
참여국	46개국		37개국	28개국
컨소시엄 규모	중소형	대형	중소형	대형

4 사업 추진체계

■ 다자 공동펀딩 R&D





02 유로스타3

1 유로스타3 프로그램 개요

①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지향형 R&D 프로그램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와 유레카 사무국 간의 공동사업

② 혁신 중소기업(Innovative SME) 지원

■ Innovative SME란?

- 새로운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유럽 및 글로벌 파트너와의 R&D 활동 또는 기타 혁신적인 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

* EU 법(2003/361) 상의 중소기업 정의 참조 필요

③ 유럽의 기술 경쟁력, 고용 증대, 경제 성장 및 지속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

④ 상향식(Bottom-up) 프로그램

■ EU 법(2003/361) 상 중소기업 정의

분류	근로자 수	매출액	자산총계
Medium-sized	< 250	≤ 50 M€	≤ 43 M€
Small	< 50	≤ 10 M€	or ≤ 10 M€
Micro	< 10	≤ 2 M€	≤ 2 M€



2

유로스타3 참여기준

① 서로 다른 유로스타 참여국 2개 이상, 2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 참여

- 유로스타 3 규정에 따라,
컨소시엄에 **최소 1개의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반드시 포함

②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모든 산학연 참여 가능

한국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정부 지원 가능

③ 국가 별 참여 및 펀딩 기준은 각국의 공고를 참고할 것

3

유로스타3 회원국 : 총 37개국

①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속하는 국가 - 31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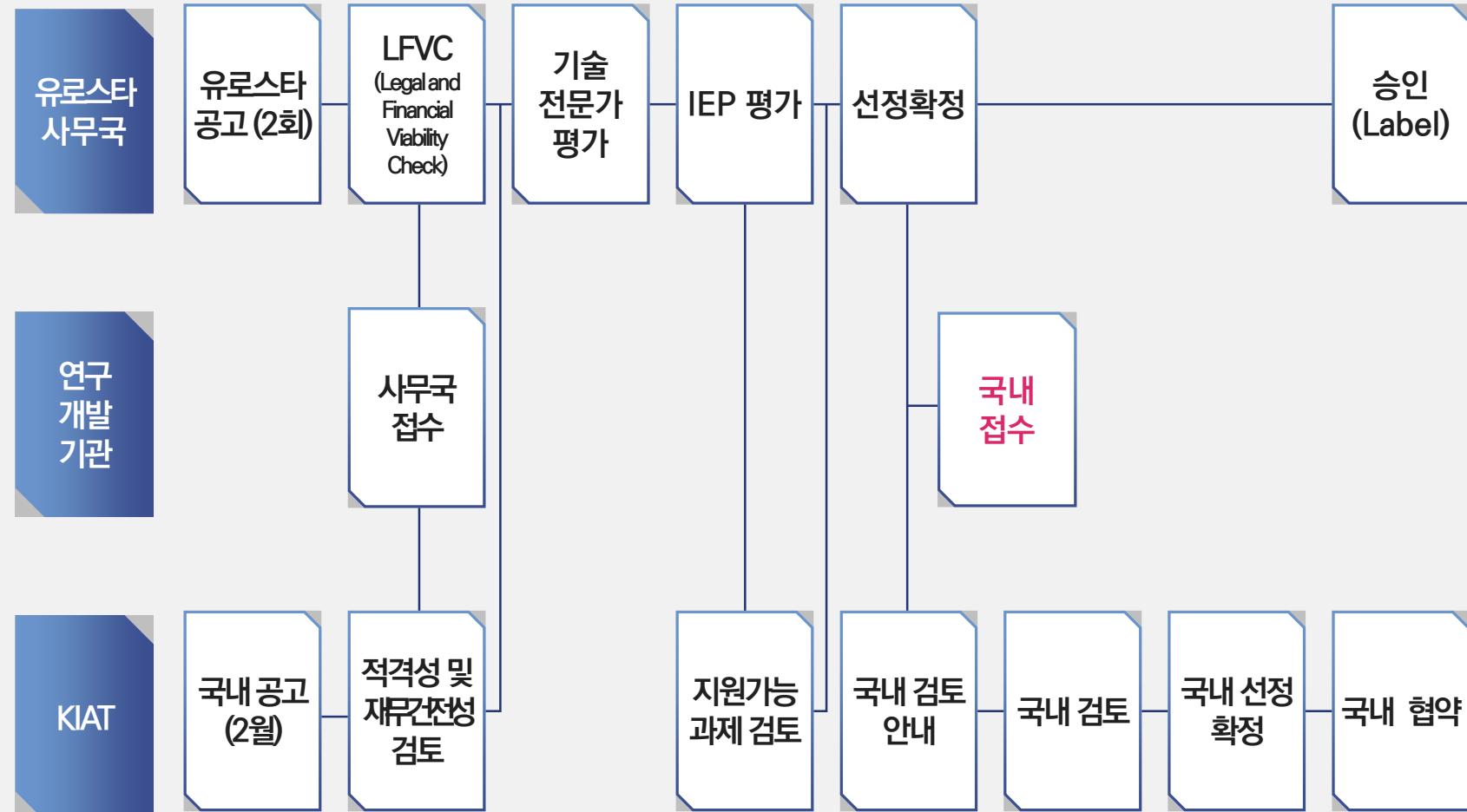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체코, 독일, 아스라엘~~

②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에 속하지 않는 국가 - 6개국

한국, 캐나다,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영국

4

세부 추진 절차



5

세부 일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년1월	2월	3월
유럽 중앙 일정	접수 시작 (7.12)		접수마감 (9.15) CEST14:00 KST 21:00	LFVC (Legal and Financial Viability Check)	기술전문가 평가	IEP 평가	선정 확정		
국내 일정				적격성 및 재무건전성 검토		국문 연구 계획서 접수	국문 계획서 검토	최종 확정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평가 및 진행 절차 개요

	절차	수행주체
1단계	적격성 검토(Eligibility Check)	유레카 사무국
2단계	재무건전성 검토 (Legal and Financial Viability Check)	각국 전담기관
	기술평가(Remote assessment)	기술평가위원회
3단계	패널평가 및 순위 책정(Ranking)	독립평가패널(IEP)
	윤리검토(Ethic Reviews)	유레카 사무국
4단계	펀딩 협약(Funding synchronization)	각국 전담기관
5단계	최종 펀딩 승인 과제 발표	유레카 사무국

7

접수처

유럽 중앙 접수

EPMP
(www.myeurekaproject.org)

국내 접수

K-PASS
(www.k-pass.kr)

EUREKA Project Management Platform [Sign In](#)

Innovation calls

Filter competitions 1 call

Keywords

Update results

Eurostars 3 - Call 3

The Eurostars call is open for innovative SMEs and other organisations who want to collaborate in an international R&D&I project.

Eligibility
Eurostars supports innovative SMEs and their partners by funding their international R&D innovative projects. Projects must be collaborative and result in the creation of a new product, process or service that can be rapidly commercialised after the end of the project. Projects can address any technological and market areas and must have a civilian purpose.

Open now
Opened: 13 July 2022 Central European Time (CET)
Closes: 15 September 2022 Central European Time (CET)

Need help with this service? [Contact us](#)

kpass 주요사업 알림 정보 소통 국민신문고 과제관리

KIAT Project Advanced Smart System
누구나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KIAT 과제관리시스템

01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MCs) 0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03 산업기술 R&D 종합정보시스템(e-R&D) 04 NTB 기술은행

과제신청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전자협약 협약변경 신청 보고서 제출 성과조사

사업공고
2021년도 사업제안 연계 컨설팅 지원사업 2차 ~ 2021-09-14 ~ 2021-10-13 [접수종]

공고 상세검색
광고명 전체

공지사항
K-PASS 시스템 충지 안내
정보화정에서 안내드립니다. K-PASS 시스템 개...



03 접수 전 주의사항

① 전담기관(NPC) 문의

- 각국 전담기관(한국-KIAT)에 과제 접수 전 연락하여 접수 절차, 제출 서류 및 편당 규모 등 문의
 - 각국 규정에 따라 편당 형태, 규모 등이 모두 상이하므로 전담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 파악 후 지원

② 과제 중앙 접수 후 수정 및 변경 불가

-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수정 및 변경이 불가능함
- 기관정보와 같은 경우 일부 변경 가능하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접수 기한 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것을 추천

③ 유로스타2 와의 차이점



	변경 전	변경 후
1	R&D Performing SMEs	Innovate SMEs
2	한 국가, 한 기관에서 전체 연구개발비의 75%이상 배정하여서는 안됨	한 국가, 한 기관에서 전체 연구개발비의 70%이상 배정하여서는 안됨



2 적격성(Eligibility) 검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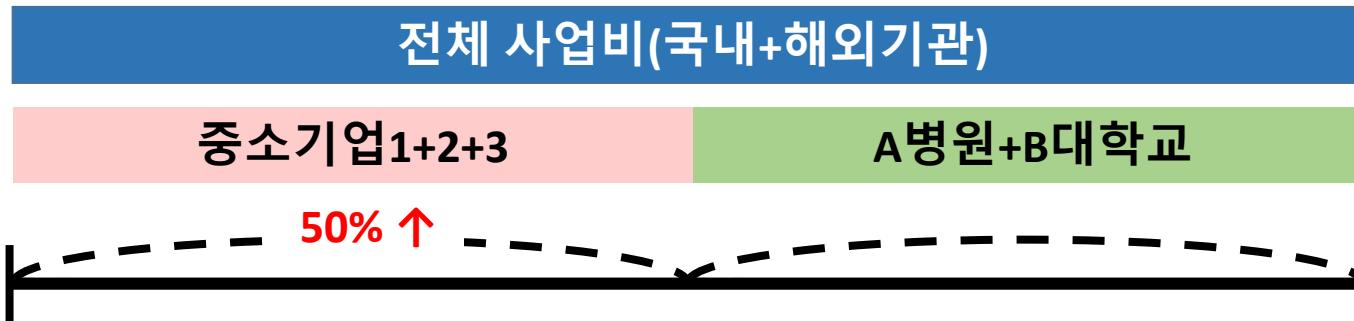
- ① 컨소시엄 메인(리드) 기관은 반드시 유로스타3 회원국 소재 혁신 중소기업(Innovative SME)이어야 함
- ② 컨소시엄은 유로스타3 회원국 2개국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유로스타 3 규정에 따라,
컨소시엄에 **최소 1개의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③ 컨소시엄은 반드시 두 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을 포함하여야 함
- ④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비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이어야 함(하청계약 제외)
- ⑤ 한 국가, 한 기관에 전체 연구개발비의 70% 이상을 배정하여서는 안 됨
- ⑥ 사업 수행기간은 36개월 이하여야 함
- ⑦ 프로젝트는 반드시 민간 목적의 사업이어야 함

3 사업비 규정 예시

▣ 컨소시엄 구성 예시

한국	프랑스	스위스
중소기업 1	중소기업2	중소기업3
A병원	B대학교	

▣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비가 전체 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이어야 함(하청계약 제외)



▣ 한 국가, 한 기관에 전체 연구개발비의 70% 이상을 배정하여서는 안 됨





04 지원 기준 및 유의사항

A 국내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정자격

- 지원규모 : 최대 5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 최대 3년 이내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 중소/중견 기업 (공동 연구기관 자격 제한 없음)

※ 사무국 접수(온라인) 완료 기관에 한하여 국내접수(온라인) 가능, 연구개발비 변경 불가능

※ 영문사업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함

B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A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을 합한 금액임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B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C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3 사업비 규정 예시 - 중소기업

1 전체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7%까지 지원



2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40% 이상 계상 가능



4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 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4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 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주)한국기업평가, (주)한국신용평가, (주)나이스 신용평가,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신용평가, 이크레더블”
에서 발급한 기업신용등급만 인정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제7조(재무요건 미적용)에 의거하여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2021년 및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해 기술개발평가지침 별표2 2. 신청자격 검토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의 검토 기준 중 5호 전단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4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05 K-TAG 사전컨설팅

1

지원
개요

- 목적 : 유로스타3 전문가를 활용한 영문 사업계획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서의 완성도 제고 및 국내 기관의 참여 확대
 - * 자문위원 : 유로스타3 평가위원(IEP)으로 참여 중인 재외한인공학자
- 대상 : 유로스타3 COD-3(3차)에 접수 예정인 국내 산·학·연 연구자

2

지원
내용

- 유로스타3 영문 사업계획서 사전 컨설팅 (무료)
 - 영문 사업계획서 작성내용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의견서
 - 본 컨설팅은 선택 사항으로, 컨설팅 내용에 대한 수용은 신청과제의 자율 의사에 따름. 동 컨설팅 참여결과는 유로스타3 과제의 최종 선정결과와 무관함

■ <참고> 유로스타 3 평가기준

지표	수행능력 및 효율성 (기본 평가)	영향력 (시장과 사업화)	우수성 (혁신과 R&D)
세부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 자체 수준 ■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 프로젝트 관리 및 계획의 현실성 및 명확성 ■ 합리적 비용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크기 ■ 시장 접근 및 위험 ■ 경쟁 우위 ■ 상업화 계획의 현실성 및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수준 ■ 새롭게 적용된 지식 ■ 기술 진보 수준 ■ 실현 가능성 및 위험성

3

지원 절차 및 일정

컨설팅 공모

컨설팅 지원
내용/일정 안내

'22.7월 중~

접수 마감

수요접수
(영문사업계획서
제출)

'22.8.22.(월)까지

사전 컨설팅

검토의견서
작성 및 송부

~'22.9.2.(금)까지

최종 접수

영문사업계획서
보완 및 최종
접수
(연구개발기관)

'22.9.15.(목) 까지

4

컨설팅 접수 방법

■ 접수마감 : 2022년 8월 22일(월) 18:00 (한국시간 기준)

■ 제출양식 : 유로스타3 영문 사업계획서

- 유로스타 3는 플랫폼상에 직접 작성하는 형태로, 작성 예정 내용을 워드파일에 기재 또는 접수 페이지에
직접 작성 후 PDF 출력하여 제출

■ 제출 방법 : 접수 기간 내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제출처 : KIAT 유럽사무소 유인영 선임연구원(europe1@kiat.or.kr)



06 Q&A

2022 유로스타3 3차 공고 온라인 설명회

감사합니다.

2022. 07. 25.